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59
----------	-----

2019. 9. 2.(월)  
정책복지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상욱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9년 8월 16일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19년 8월 23일

- 제37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이상욱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센터의 사업내용에 대해 규정함 (안 제4조)
- 센터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대해 규정함 (안 제5조)
- 센터 운영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함 (안 제6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 (이강근 수석전문위원)

### 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도 내 청각·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고자 설치, 운영 중인 충청북도 수화통역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※ 충북 청각·언어장애인 현황(18): 13,613명(청각 12,951명, 언어 662명)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4조는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의 사업 내용에 대해 규정한 것임.
  -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는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, 충북농아인협회에서 운영 중인 시설임.
  - 보건복지부의 ‘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’에 따르면, 수어통역센터 사업의 주체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시·도협회에 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를 두고 시·군·구지부에 수어통역센터를 둔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수어통역센터(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)의 지역지원본부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.

※ 도 내 센터현황 : 충청북도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(1개소), 시군 수어통역센터(9개소)

- 이에, 본 조례안에서 지역지원본부의 기능인 ‘시·군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’, ‘시·군 센터 업무 지원 사업’, ‘도 내 청각·언어장애인 관련 통계 조사·관리 사업’ 등을 포함하여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가 지역지원본부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○ 안 제5조에서는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운영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현재 도에서는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에 2019년 기준 295,500천원(도비 100%)의 운영 지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,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보조금 운영에 대한 관리 규정을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**□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사업개요**

○ 사업위치 :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(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내)

○ 사업기간 : 2019. 1. ~ 12.

○ 사업량 : 1개소

○ 사업비 : 295,500천원 (도비 100%)

- 산출근거: '18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보수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

○ 지원내용 : 종사자 인건비(6명) 및 시설운영비

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,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절차상 조례안 예고, 담당 집행부 의견 수렴 및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거친 것으로 절차상으로도 타당함.

## <참고자료> 충청북도 청각·언어 장애인 현황

(2018년 12월 말 기준, 단위 : 명)

	청주	충주	제천	옥천	보은	단양
청각장애	4,943	2,088	1,186	795	573	332
언어장애	296	82	55	22	21	10
계	5,239	2,170	1,241	817	594	342

	괴산	진천	영동	증평	음성	계
청각장애	663	578	652	355	786	12,951
언어장애	29	45	29	26	47	662
계	692	623	681	381	833	<b>13,613</b>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수정가결”

7. 수 정 안 요 지

가. 수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수정함.

나. 수정 주요내용

- “서비스 평가 사업” 을 “서비스 교류 사업” 으로 수정(안 제4조)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 및 조문 대비표
- 「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(수정안 포함)」

#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: 2019년 8월 23일

제안자: 박형용 의원

## 가. 수정이유

-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의 사업 내용에 포함된 “서비스 평가 사업”은 자칫 시·군 센터에 대한 의무부과 및 규제로 해석되어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.

## 나. 수정 주요내용

- “서비스 평가 사업”을 “서비스 교류 사업”으로 수정(안 제4조)

##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의 서비스 평가” 를 “와의 서비스 교류” 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4조(사업 내용)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도 내 시·군 수어통역센터(이하 “시·군 센터”라 한다)의 <u>서비스 평가 사업</u></p>	<p>제4조(사업 내용)</p> <p>1. 2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3.----- -----<u>와의</u> <u>서비스 교류 사업</u></p>

## 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(수정안 포함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수어통역센터”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에 따라 설치되는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“라 한다)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·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 내용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수어 통역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사업
2.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
3. 도 내 시·군 수어통역센터(이하 “시·군 센터”라 한다)와의 **서비스 교류 사업**
4. 시·군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
5. 시·군 센터 업무 지원 사업
6. 도 내 청각·언어장애인 관련 통계 조사·관리 사업
7. 도 수어통역 서비스 및 사례관리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사업
8. 도 내 청각·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의 민주성·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조(보조금 지원)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
2. 제4조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

제7조(보조금의 관리) 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②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장애인복지법

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인 거주시설: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·요양·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
2.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: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·치료·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,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
3.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: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
4. 장애인 의료재활시설: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, 진단·판정,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
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9조(장애인복지시설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

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「의료법」에 따른다.

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·신고·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**제81조(비용 보조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## 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**제44조(비용보조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.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 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.

## 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

**제41조(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)**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,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별표4]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(제41조 관련)

<p>2.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</p>	<p>자. <u>수화통역센터: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· 언어장애인에게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#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 소요 경비 등

## 3. 관련조문

- 안 제1조 (목적), 제2조 (정의)
- 안 제3조 (도지사의 책무)
- 안 제4조 (사업 내용)
- 안 제6조 (보조금 지원), 제7조(보조금의 관리)

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재정수반 요인

- 충청북도 수어통역센터 및 수어교실 운영비 지원

### 나. 추계의 전제

- 연중

### 다. 추계결과 : '20년부터 향후 5년간 연 천원

###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 5. 연도별 비용 추계서 : 붙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0년도)	2차년도 (2021년도)	3차년도 (2022년도)	4차년도 (2023년도)	5차년도 (2024년도)
세 출	1,699,582	320,124	329,728	339,620	349,808	360,302

※①'19년도(310,800천원) : '19년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295,500천원+15,300천원

②1차년도(2020년도) 이후 : 전년도 대비 매년 3% 인상 계상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도)	2차년도 (2020년도)	3차년도 (2021년도)	4차년도 (2022년도)	5차년도 (2023년도)	계
세 입						
세 출	320,124	329,728	339,620	349,808	360,302	1,699,582
수어통역센터 운영	304,365	313,496	322,901	332,588	342,565	1,615,915
수어교실 운영	15,759	16,232	16,719	17,220	17,737	83,667
재원조달	320,124	329,728	339,620	349,808	360,302	1,699,582
의 존 재 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 부세					
자 체 수 입	소 계	320,124	329,728	339,620	349,808	360,302
	지방세	320,124	329,728	339,620	349,808	360,302
	세외수 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특별회계						
시·군비						
기 타 (민간 자부담)						